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안내

지난 5월 30일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들께
우리시는 6월, 7월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면제로 일괄 보상하고
일괄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신청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상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상대상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

보상지역 중구(영종·영종1·운서·용유동), 서구, 강화군

※ 서구 제외지역(부평수계지역):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공장지역

※ 강화군 제외지역(상수도 미공급지역): 서도면, 삼산면

보상기간 2019년 5월 30일 ~ 2019년 8월 4일

신청기간 ▶ 온 라인 신 청 : 2019. 8. 12(월) 오전 9시 ~ 8. 30(금) 오후 6시 (19일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우 편 신 청 : 2019. 8. 19(월) 오전 9시 ~ 8. 30(금) 오후 6시 (12일간)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 안전정책과)

▶ 현장방문신청 : 2019. 8. 19(월) 오전 9시 ~ 8. 30(금) 오후 6시 (12일간)

- 거주지와 관계없이 피해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접수예정이나
8.14.이후 市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 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처는 8.19(월)~8.25(일)까지 운영

보상절차 ▶ 일괄보상 : 별도의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추가 면제 (6, 7월분 기 면제조치)

▶ 신청보상 : 일괄보상에 이의가 있는 주민 또는 소상공인

- 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액 확정 → 개별통지 → 계좌 입금

- 보상 심의는 생수 등 실비, 상하수도 요금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 범위내에서 피해금액 산정

문 의 처 미추홀콜센터 (☎120) ※ 보상항목·접수처·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市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